

삼구트리니언 시그니처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
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제출기한 : 2022.07.08.(금) ~ 2022.07.14.(목) 10:00 ~ 17:00(7일간)
- 장 소 : 삼구트리니언 시그니처 건본주택 [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72 (죽도동)] ☎ 1666 - 7400
- 유의사항 :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 06. 16.) 이후 발급분에 한함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※ 대리 발급분 불가 •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)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•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(출입국기록출력 Y로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
소득증빙서류 (다음 페이지 참조)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증빙서류	
추가 자격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비사업자 확인 각서 (다음 페이지 참조)	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	• 건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기본증명서	자녀	•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건본주택에 비치
	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에 한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부동산소유현황 (다음 페이지 참조)	본인 및 세대원	•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군복무기간 10년이상을 명시)
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해당자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		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 ※ 대리 발급분 불가
	위임장	본인	•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중 택1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. 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)
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

■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]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(또는국세청홈택스)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16. 기준),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세무서 (또는국세청홈택스)
	신규사업자 /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국민연금공단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신고서(매입,매출 기재된 부분) ② 무실적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관리공단/세무서 ②,③ 세무서(또는 국세청홈택스)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	① 세무서 (또는국세청홈택스)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16. 기준)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/ 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복복지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,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※ 상기서류 없는 경우,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1)의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	① 건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	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.

※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■ 부동산 소유현황 등 (※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부동산소유현황	본인,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등기사항전부증명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소유에 따른 등기사항발급 -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 내역서(건축물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자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- 발급기관 : 행정복지센터. 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(토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- 발급기관 :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축산업허가증 등 (부동산 자산 제외사항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, 구, 읍,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이면서,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 • 농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발급기관 :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) ② 해당 농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• 축산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축산업 허가증 ②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(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급기관 : 토지e음(www.eum.go.kr) > 토지이용계획 > 지번입력 >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③ 해당 축산업 사업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
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(부동산 자산 제외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•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된 경우 등 제한을 받는 경우. ①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② 현장 사진 ③ 해당 토지이용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급기관 : 토지e음(www.eum.go.kr) > 토지이용계획 > 지번입력 > 소재지 및 도면 등 인쇄 • 신규 분양권 등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일반자산가액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되지 않음. ※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기 	

■ 해외근로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(※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)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반드시 제출) 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(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)
추가서류 (해당자 한함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또는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 이하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